

# 업무협약서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과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라 한다)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제1조(목적)

본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구축과 업무추진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력내용)

양 기관은 본 업무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호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치과병원”은 “복지관”에서 의뢰받은 장애인의 구강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과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며, 필요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심리·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며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복지관”은 관내 구강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이 제한되는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시 “치과병원”으로 치과진료를 의뢰하여 시기적절한 치료 및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양 기관은 장애인의 보건·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필요시 장애인을 위한 구강 건강 증진사업 등에 상호 협력한다.
4. 기타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적극 협력하며, 세부사항은 사전협의를 거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결정하여 시행한다.

## 제3조(협약의 효력)

1. 협약서는 업무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본 업무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상호 협의 하에 변경 가능하며, 협약 당사자가 본 협약을 위배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지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상호 성실히 협력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긴밀히 협조한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본 협약서와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 기밀사항 및 개인정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조항의 의무는 협약서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존속된다.

**제6조(기타사항)**

기타 제휴사항의 추가·변경 및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이 협약을 근거로 상호간에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효력발효)**

본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하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업무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02월 27일



병원장 조 봉 혜

관 장 여 미 진

*Handwritten signature of Jo Bong-hye*

*Handwritten signature of Ye Mi-jin*